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64 호 2024. 7. 19.(목)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43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1043호

##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관내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 및 옥외광고물의 분류 용어변경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효율 증대,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로등 현수기 위탁관리 근거 마련(안 제19조)
  - 축제, 문화행사 등 홍보를 위해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4)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2016. 9.)에 따라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과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옥외광고물의 분류 용어변경 반영(안 별표 1, 안 별표 3)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신설 반영(안 별표 6)
  - 옥외광고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7)

####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9조, 제10조의4, 17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38조, 제55조, 제43조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32, 팩스번호 : 052)241-801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제12조의 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45만원
- 16㎡ 초과 18㎡ 이하	165만원
- 18㎡ 초과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50만원
- 16㎡ 초과 18㎡ 이하	170만원
- 18㎡ 초과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p>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 룬</p> <p>1)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 30만원</li> <li>- 0.5㎡ 초과 1㎡ 이하 35만원</li> <li>- 1㎡ 초과 2㎡ 이하 40만원</li> <li>- 2㎡ 초과 3㎡ 미만 48만원</li> </ul> <p>2)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초과 3.5㎡ 이하 55만원</li> <li>- 3.5㎡ 초과 4㎡ 이하 65만원</li> <li>- 4㎡ 초과 4.5㎡ 이하 80만원</li> <li>- 4.5㎡ 초과 5㎡ 미만 95만원</li> </ul> <p>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초과 6㎡ 이하 110만원</li> <li>- 6㎡ 초과 7㎡ 이하 130만원</li> <li>- 7㎡ 초과 8㎡ 이하 150만원</li> <li>- 8㎡ 초과 9㎡ 이하 170만원</li> <li>- 9㎡ 초과 10㎡ 미만 190만원</li> </ul> <p>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 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u>벽 면 이용</u> 간판</p> <p>1) 연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이하 30만원</li> <li>- 2㎡ 초과 3㎡ 이하 35만원</li> <li>- 3㎡ 초과 4㎡ 이하 40만원</li> <li>- 4㎡ 초과 5㎡ 미만 48만원</li> </ul> <p>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초과 6㎡ 이하 55만원</li> </ul>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초과 7㎡ 이하</li> <li>- 7㎡ 초과 8㎡ 이하</li> <li>- 8㎡ 초과 9㎡ 이하</li> <li>- 9㎡ 초과 10㎡ 미만</li> </ul>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초과 12㎡ 이하</li> <li>- 12㎡ 초과 14㎡ 이하</li> <li>- 14㎡ 초과 16㎡ 이하</li> <li>- 16㎡ 초과 18㎡ 이하</li> <li>- 18㎡ 초과 20㎡ 미만</li> </ul>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초과 25㎡ 이하</li> <li>- 25㎡ 초과 30㎡ 이하</li> <li>- 30㎡ 초과 35㎡ 이하</li> <li>- 35㎡ 초과 40㎡ 이하</li> <li>- 40㎡ 초과 45㎡ 이하</li> <li>- 45㎡ 초과 50㎡ 미만</li> </ul> 5) 연면적 50㎡ 이상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전탑, 아치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이하</li> <li>- 연면적 5㎡ 초과 10㎡ 이하</li> <li>-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li> <li>- 연면적 15㎡ 초과 20㎡ 미만</li> <li>- 연면적 20㎡ 이상</li> </ul> </li> <li>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li> </ul>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드벌룬(공) 1개</li> <li>- 애드벌룬(공) 2개</li> <li>- 애드벌룬(공) 3개 이상</li> </ul>	<p>30만원</p> <p>60만원</p> <p>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이하</li> </ul>	<p>3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초과 10㎡ 이하</li> </ul>	<p>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li> </ul>	<p>6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li> </ul>	<p>7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 이상</li> </ul>	<p>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p>
<p>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2) 교통안내소</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p>	
<p>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이하</li> </ul>	<p>1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초과</li> </ul>	<p>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2) 그 밖의 교통수단</p>	
<p>가)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하</li> </ul>	<p>1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초과 2㎡ 이하</li> </ul>	<p>2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초과 3㎡ 미만</li> </ul>	<p>29만원</p>
<p>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초과 4㎡ 이하</li> </ul>	<p>35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초과 5㎡ 미만</li> </ul>	<p>45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이상</li> </ul>	<p>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p>
<p>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u>가. 벽면 이용 간판</u>	
1) <u>자사광고</u>	
- <u>면적 5㎡ 이하</u>	4,000원
- <u>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u>	1,500원
2) <u>타사광고</u>	
- <u>면적 5㎡ 이하</u>	<u>40,000원</u>
- <u>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u>	<u>2,000원</u>
<u>나. 돌출간판</u>	
- 연면적 6㎡ 이하	20,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5,000원
등(개당)	
<u>다. 공연간판</u>	<u>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u>
<u>라. 옥상간판</u>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u>마. 지주 이용 간판</u>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u>바. 애드벌룬</u>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u>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u>	
- 연면적 1㎡ 이하	3,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1,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u>입간판</u>	<u>4,000원</u>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u>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u>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더. 전자게시대(1건)	6,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u>가. 벽면 이용 간판</u>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u>나. 돌출간판</u>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2,000원</u>
<u>다. 옥상간판</u>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 는 금액	<u>27,000원</u> <u>49,000원</u> <u>1,600원</u>
<u>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u>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8,000원</u> <u>26,000원</u> <u>1,000원</u>
<u>마. 애드벌룬</u>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u>바. 공연간판</u>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u>사. 현수막 게시시설</u>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u>14,000원</u> <u>800원</u>
<u>아. 그 밖의 광고물등</u>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그 외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u>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u></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5㎡ 초과 0.8㎡ 이하</li> <li>- 0.8㎡ 초과 1㎡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초과 1.3㎡ 이하</li> <li>- 1.3㎡ 초과 1.6㎡ 이하</li> <li>- 1.6㎡ 초과 2㎡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초과 2.3㎡ 이하</li> <li>- 2.3㎡ 초과 2.6㎡ 이하</li> <li>- 2.6㎡ 초과 3㎡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5㎡ 초과 0.8㎡ 이하</li> <li>- 0.8㎡ 초과 1㎡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초과 1.3㎡ 이하</li> <li>- 1.3㎡ 초과 1.6㎡ 이하</li> <li>- 1.6㎡ 초과 2㎡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초과 2.3㎡ 이하</li> <li>- 2.3㎡ 초과 2.6㎡ 이하</li> <li>- 2.6㎡ 초과 3㎡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u>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의2</u></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9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79만원</p> <p>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u>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u></p> <p>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p>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면적 3㎡ 미만		
- 1㎡ 이하		8만원
- 1㎡ 초과 2㎡ 이하		12만원
- 2㎡ 초과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이상 5㎡ 미만		
- 3㎡ 초과 3.7㎡ 이하		22만원
-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 4.4㎡초과 5㎡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42만원
- 6㎡ 초과 8㎡ 이하		58만원
- 8㎡ 초과 1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
		과하는 면적의 1㎡당15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0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0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0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0장 이상		장당 50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1년 이상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5항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u></p> <p><u>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u>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제12조의 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u></p> <p><u>②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신·구조문(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광고물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행강제금</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td> </tr> <tr> <td colspan="2">1) 면적 5㎡ 미만</td> </tr> <tr> <td>- 2㎡ 이하</td> <td>20만원</td> </tr> <tr> <td>- 2㎡ 초과 3㎡ 이하</td> <td>30만원</td> </tr> <tr> <td>- 3㎡ 초과 4㎡ 이하</td> <td>40만원</td> </tr> <tr> <td>- 4㎡ 초과 5㎡ 미만</td> <td>45만원</td> </tr> <tr> <td colspan="2">2) 면적 5㎡ 이상 10㎡ 미만</td> </tr> <tr> <td>- 5㎡ 초과 6㎡ 이하</td> <td>55만원</td> </tr> <tr> <td>- 6㎡ 초과 7㎡ 이하</td> <td>65만원</td> </tr> <tr> <td>- 7㎡ 초과 8㎡ 이하</td> <td>75만원</td> </tr> <tr> <td>- 8㎡ 초과 9㎡ 이하</td> <td>85만원</td> </tr> <tr> <td>- 9㎡ 초과 10㎡ 미만</td> <td>95만원</td> </tr> <tr> <td colspan="2">3) 면적 10㎡ 이상 20㎡ 미만</td> </tr> <tr> <td>- 10㎡ 초과 12㎡ 이하</td> <td>110만원</td> </tr> <tr> <td>- 12㎡ 초과 14㎡ 이하</td> <td>130만원</td> </tr> <tr> <td>- 14㎡ 초과 16㎡ 이하</td> <td>145만원</td> </tr> <tr> <td>- 16㎡ 초과 18㎡ 이하</td> <td>165만원</td> </tr> <tr> <td>- 18㎡ 초과 20㎡ 미만</td> <td>185만원</td> </tr> <tr> <td>4) 면적 20㎡ 이상</td> <td>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td> </tr> <tr> <td colspan="2">나. 돌출간판</td> </tr> <tr> <td colspan="2">1) 연면적 5㎡ 미만</td> </tr> <tr> <td>- 2㎡ 이하</td> <td>20만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45만원	- 16㎡ 초과 18㎡ 이하	165만원	- 18㎡ 초과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p>[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광고물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행강제금</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td> </tr> <tr> <td colspan="2">1) 면적 5㎡ 미만</td> </tr> <tr> <td>- 2㎡ 이하</td> <td>20만원</td> </tr> <tr> <td>- 2㎡ 초과 3㎡ 이하</td> <td>30만원</td> </tr> <tr> <td>- 3㎡ 초과 4㎡ 이하</td> <td>40만원</td> </tr> <tr> <td>- 4㎡ 초과 5㎡ 미만</td> <td>45만원</td> </tr> <tr> <td colspan="2">2) 면적 5㎡ 이상 10㎡ 미만</td> </tr> <tr> <td>- 5㎡ 초과 6㎡ 이하</td> <td>55만원</td> </tr> <tr> <td>- 6㎡ 초과 7㎡ 이하</td> <td>65만원</td> </tr> <tr> <td>- 7㎡ 초과 8㎡ 이하</td> <td>75만원</td> </tr> <tr> <td>- 8㎡ 초과 9㎡ 이하</td> <td>85만원</td> </tr> <tr> <td>- 9㎡ 초과 10㎡ 미만</td> <td>95만원</td> </tr> <tr> <td colspan="2">3) 면적 10㎡ 이상 20㎡ 미만</td> </tr> <tr> <td>- 10㎡ 초과 12㎡ 이하</td> <td>110만원</td> </tr> <tr> <td>- 12㎡ 초과 14㎡ 이하</td> <td>130만원</td> </tr> <tr> <td>- 14㎡ 초과 16㎡ 이하</td> <td>145만원</td> </tr> <tr> <td>- 16㎡ 초과 18㎡ 이하</td> <td>165만원</td> </tr> <tr> <td>- 18㎡ 초과 20㎡ 미만</td> <td>185만원</td> </tr> <tr> <td>4) 면적 20㎡ 이상</td> <td>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td> </tr> <tr> <td colspan="2">나. 돌출간판</td> </tr> <tr> <td colspan="2">1) 연면적 5㎡ 미만</td> </tr> <tr> <td>- 2㎡ 이하</td> <td>20만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45만원	- 16㎡ 초과 18㎡ 이하	165만원	- 18㎡ 초과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45만원																																																																																															
- 16㎡ 초과 18㎡ 이하	165만원																																																																																															
- 18㎡ 초과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45만원																																																																																															
- 16㎡ 초과 18㎡ 이하	165만원																																																																																															
- 18㎡ 초과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50만원
- 16㎡ 초과 18㎡ 이하	170만원
- 18㎡ 초과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 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초과 1㎡ 이하	35만원
- 1㎡ 초과 2㎡ 이하	40만원
- 2㎡ 초과 3㎡ 미만	48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2㎡ 초과 3㎡ 이하	30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50만원
- 16㎡ 초과 18㎡ 이하	170만원
- 18㎡ 초과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 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초과 1㎡ 이하	35만원
- 1㎡ 초과 2㎡ 이하	40만원
- 2㎡ 초과 3㎡ 미만	48만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초과 3.5㎡ 이하	55만원
- 3.5㎡ 초과 4㎡ 이하	65만원
- 4㎡ 초과 4.5㎡ 이하	80만원
- 4.5㎡ 초과 5㎡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110만원
- 6㎡ 초과 7㎡ 이하	130만원
- 7㎡ 초과 8㎡ 이하	150만원
- 8㎡ 초과 9㎡ 이하	170만원
- 9㎡ 초과 1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 별문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u>가로형</u>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30만원
- 2㎡ 초과 3㎡ 이하	35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초과 3.5㎡ 이하	55만원
- 3.5㎡ 초과 4㎡ 이하	65만원
- 4㎡ 초과 4.5㎡ 이하	80만원
- 4.5㎡ 초과 5㎡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110만원
- 6㎡ 초과 7㎡ 이하	130만원
- 7㎡ 초과 8㎡ 이하	150만원
- 8㎡ 초과 9㎡ 이하	170만원
- 9㎡ 초과 1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 별문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u>벽면 이용</u>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30만원
- 2㎡ 초과 3㎡ 이하	35만원
- 3㎡ 초과 4㎡ 이하	40만원
- 4㎡ 초과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55만원
- 6㎡ 초과 7㎡ 이하	65만원
- 7㎡ 초과 8㎡ 이하	75만원
- 8㎡ 초과 9㎡ 이하	85만원
- 9㎡ 초과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110만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50만원
- 16㎡ 초과 18㎡ 이하	170만원
- 18㎡ 초과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초과 25㎡ 이하	210만원
- 25㎡ 초과 30㎡ 이하	230만원
- 30㎡ 초과 35㎡ 이하	245만원
- 35㎡ 초과 40㎡ 이하	260만원
- 40㎡ 초과 45㎡ 이하	280만원
- 45㎡ 초과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별론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이상	7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별론	
- 애드별론(공) 1개	30만원
- 애드별론(공) 2개	60만원
- 애드별론(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별론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12㎡ 초과 14㎡ 이하	130만원
- 14㎡ 초과 16㎡ 이하	150만원
- 16㎡ 초과 18㎡ 이하	170만원
- 18㎡ 초과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초과 25㎡ 이하	210만원
- 25㎡ 초과 30㎡ 이하	230만원
- 30㎡ 초과 35㎡ 이하	245만원
- 35㎡ 초과 40㎡ 이하	260만원
- 40㎡ 초과 45㎡ 이하	280만원
- 45㎡ 초과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별론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이상	7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별론	
- 애드별론(공) 1개	30만원
- 애드별론(공) 2개	60만원
- 애드별론(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별론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이행강제금</th> </tr> </thead> <tbody> <tr> <td>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td> <td>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td> </tr> <tr> <td>2) 교통안내소</td> <td>가로형 간판에 준함</td> </tr> <tr> <td>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td> <td>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td> </tr> <tr> <td>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td> <td>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r> <tr> <td>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td> <td>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r> <tr> <td>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td> <td></td> </tr> <tr> <td>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td> <td>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td> </tr> <tr> <td>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1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이행강제금</th> </tr> </thead> <tbody> <tr> <td>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td> <td>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td> </tr> <tr> <td>2) 교통안내소</td> <td>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td> </tr> <tr> <td>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td> <td>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td> </tr> <tr> <td>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td> <td>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r> <tr> <td>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td> <td>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r> <tr> <td>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td> <td></td> </tr> <tr> <td>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td> <td>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td> </tr> <tr> <td>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1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1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10만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1㎡ 초과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초과 4㎡ 이하	35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1㎡ 초과 2㎡ 이하	20만원
- 2㎡ 초과 3㎡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초과 4㎡ 이하	35만원
- 4㎡ 초과 5㎡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현행	개정안
<p>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p> <p>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p>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p> <p>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현행	개정안																																																				
<p>[별표 3]  <u>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152 770 999 1425">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u>가. 가로형 간판</u></td> <td></td> </tr> <tr> <td><u>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u></td> <td></td> </tr> <tr> <td>- 면적 6㎡ 이하</td> <td>4,000원</td> </tr> <tr> <td>-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500원</td> </tr> <tr> <td><u>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u></td> <td></td> </tr> <tr> <td>- 면적 6㎡ 이하</td> <td>40,000원</td> </tr> <tr> <td>-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2,000원</td> </tr> <tr> <td><u>나. 세로형 간판</u></td> <td></td> </tr> <tr> <td>- 면적 6㎡ 이하</td> <td>3,000원</td> </tr> <tr> <td>-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500원</td> </tr> <tr> <td><u>다. 돌출간판</u></td> <td></td> </tr> <tr> <td>- 연면적 6㎡ 이하</td> <td>20,000원</td> </tr> <tr> <td>-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수수료	<u>가. 가로형 간판</u>		<u>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u>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u>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u>나. 세로형 간판</u>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다. 돌출간판</u>		- 연면적 6㎡ 이하	20,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p>[별표 3]  <u>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1070 762 1917 1425"> <thead> <tr> <th>광고물등</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u>가. 벽면 이용 간판</u></td> <td></td> </tr> <tr> <td><u>1) 자사광고</u></td> <td></td> </tr> <tr> <td>- 면적 5㎡ 이하</td> <td>4,000원</td> </tr> <tr> <td>-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500원</td> </tr> <tr> <td><u>2) 타사광고</u></td> <td></td> </tr> <tr> <td>- 면적 5㎡ 이하</td> <td>40,000원</td> </tr> <tr> <td>-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2,000원</td> </tr> <tr> <td><u>나. 돌출간판</u></td> <td></td> </tr> <tr> <td>- 연면적 6㎡ 이하</td> <td>20,000원</td> </tr> <tr> <td>-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td> <td>1,000원</td> </tr> <tr> <td>-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td> <td>5,000원</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수수료	<u>가. 벽면 이용 간판</u>		<u>1) 자사광고</u>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2) 타사광고</u>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u>나. 돌출간판</u>		- 연면적 6㎡ 이하	20,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u>가. 가로형 간판</u>																																																					
<u>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u>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u>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u>나. 세로형 간판</u>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다. 돌출간판</u>																																																					
- 연면적 6㎡ 이하	20,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u>가. 벽면 이용 간판</u>																																																					
<u>1) 자사광고</u>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u>2) 타사광고</u>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u>나. 돌출간판</u>																																																					
- 연면적 6㎡ 이하	20,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수수료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라. 공연간판	<u>가로형간판 1)과 같음</u>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	

광고물등	수수료
라. 공연간판	<u>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u>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현 행

개 정 안

광고물등	수수료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가. 전단(1,000매당)	5,000원
나. <u>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u> <u>(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u> <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u> <u>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u>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다. 전자계시대(1건)	6,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u>다. 입간판</u>	<u>4,000원</u>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가. 전단(1,000매당)	5,000원
<u>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u>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다. 전자계시대(1건)	6,000원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계시대, 가로등 현수기, 지정벽보판, 전자계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에드빌(4미터 이상의 게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에드빌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5㎡ 초과 0.8㎡ 이하</li> <li>- 0.8㎡ 초과 1㎡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초과 1.3㎡ 이하</li> <li>- 1.3㎡ 초과 1.6㎡ 이하</li> <li>- 1.6㎡ 초과 2㎡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초과 2.3㎡ 이하</li> <li>- 2.3㎡ 초과 2.6㎡ 이하</li> <li>- 2.6㎡ 초과 3㎡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법 제20조 제1항제3호</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 한 금액 이하</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5㎡ 초과 0.8㎡ 이하</li> </ul>		<p>8만원</p> <p>12만원</p>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를 위반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li>- 0.5㎡ 초과 0.8㎡ 이하</li> <li>- 0.8㎡ 초과 1㎡ 미만</li> </ul>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초과 1.3㎡ 이하</li> <li>- 1.3㎡ 초과 1.6㎡ 이하</li> <li>- 1.6㎡ 초과 2㎡ 미만</li> </ul>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초과 2.3㎡ 이하</li> <li>- 2.3㎡ 초과 2.6㎡ 이하</li> <li>- 2.6㎡ 초과 3㎡ 미만</li> </ul> <p>라) 연면적 3㎡ 이상</p>	<p>법 제20조제 1항제1호 및 제1의2</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15만원 을 더한 금액 이 하</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하</li> </ul>		<p>8만원</p>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0.8㎡ 초과 1㎡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33만원
- 1.6㎡ 초과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58만원
- 2.3㎡ 초과 2.6㎡ 이하		67만원
- 2.6㎡ 초과 3㎡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
<u>나. 현수막</u>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이하		8만원
- 1㎡ 초과 2㎡ 이하		12만원
- 2㎡ 초과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이상 5㎡ 미만		
- 3㎡ 초과 3.7㎡ 이하		22만원
-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33만원
- 1.6㎡ 초과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58만원
- 2.3㎡ 초과 2.6㎡ 이하		67만원
- 2.6㎡ 초과 3㎡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u>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u>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이하		8만원
- 1㎡ 초과 2㎡ 이하		12만원
- 2㎡ 초과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이상 5㎡ 미만		
- 3㎡ 초과 3.7㎡ 이하		22만원
-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4.4m초과 5m <sup>2</sup> 미만		32만원
다) 면적 5m <sup>2</sup> 이상 10m <sup>2</sup> 미만 - 5m <sup>2</sup> 초과 6m <sup>2</sup> 이하 - 6m <sup>2</sup> 초과 8m <sup>2</sup> 이하 - 8m <sup>2</sup> 초과 10m <sup>2</sup>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m <sup>2</sup>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sup>2</sup>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u>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u>		<u>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증가</u>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4.4m초과 5m <sup>2</sup> 미만		32만원
다) 면적 5m <sup>2</sup> 이상 10m <sup>2</sup> 미만 - 5m <sup>2</sup> 초과 6m <sup>2</sup> 이하 - 6m <sup>2</sup> 초과 8m <sup>2</sup> 이하 - 8m <sup>2</sup> 초과 10m <sup>2</sup>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m <sup>2</sup>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sup>2</sup> 초과하는 면적의 1m <sup>2</sup>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u>&lt;삭 제&gt;</u>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u>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20조 제1항제1의3</u>	<u>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u>
<u>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u>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4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u>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u>		<u>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 만원을 더한 금액</u>
<u>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u>		<u>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 만원을 더한 금액</u>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4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p> <p>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p> <p>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p> <p>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p>	<p>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p> <p>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p> <p>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p> <p>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p> <p><u>5.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u></p> <p><u>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u></p> <p><u>7. 그 외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u></p>

## 관계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라. : 생략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